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설립근거 마련 등〉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04호)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설립근거 마련 등	2
2. 안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	8
※ 참고자료	11
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현황	11
2.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안)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간 업무 비교 ...	15
3.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전환 시(전환 초기) 소요경비(안)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선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5. 9. 18.
3.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은 주민 간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설립근거 마련 등(안 제24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연구, 정책대안 개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의 설립근거와 정부 출연금 등 그 운영재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①</u> <u>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 <u>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u> <u>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u> <u>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u>

	<u>4.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절차 안내·상담·알선 등 종합적 민원 업무</u> <u>5.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관련 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u> <u>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u> <u>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 간단체에 대한 지원</u> <u>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u> <u>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u> <u>2. 수익사업의 이익금</u> <u>3. 그 밖의 수입금</u> <u>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u>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	---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¹⁾는 2007년 5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구축 등의 업무를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위탁 대가로 통일부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위탁사업비)으로부터 동 협회의 운영경비(인건비,

1) 참조자료 1

기본경비,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고 있음.²⁾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수행 업무 〉

업무	세부업무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교류협력 기반 조성
	교류협력 종합 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개성공단 기업 관리 및 안정화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협력기반 다변화 추진
	북한지하자원시스템 운영·관리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대민행정 및 정책지원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³⁾는 동 협회를 남북 교류·협력 촉진사업의 유일한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로 인해 동 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촉진 사업을 전담하는 단일

2) 동 협회는 2026년 통일부로 부터 위탁 받을 예정인 47억 4,100만원으로 협회의 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전액을 충당할 계획임.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위탁 업무 및 비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위탁업무	위탁 비용	위탁예정기관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2,468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1,441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38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794	
	합계	4,741	

자료: 통일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위탁 근거 법률 〉

수탁업무	수탁 근거법률
남북교류협력관리업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 이에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동 협회가 위탁받고 있는 업무가 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기관 유지를 위한 운영재원 부족 등으로 동 협회의 존속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음.

이와 같이 동 협회는 수입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촉진사업의 단일창구로서의 법적지위도 갖지 못하여 정부 위탁 업무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동 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사업의 단일 창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수입 기반 하에 민관 거버넌스의 허브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인 동 협회를 법정기관(특수법인⁴⁾)으로 전환할 경우, 약화된 민관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특수법인이란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함.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됨(「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 다만, 제19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 지정,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설립)의 법률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임기만료로 각각 폐기된 바 있었음.⁵⁾⁶⁾
- 통일부는 동 협회가 법정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외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의 해외 사무소 설치시 이미 해외 주요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통일·안보 분야 주재관과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발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 제24조의3 제2항 전단에서는 ‘주된 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주소지이자 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지로서 중심적 의미를 가지며,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 설치되는 종속적인 사무소를 의미함.

5) 제19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1901933호)이 2012년 9월 24일 제출된 바 있고, 2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812)이 2018년 5월 28일 발의된 바 있으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됨.

제21대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의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752)이 2021년 4월 27일 발의된 바 있으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됨.

6) 당시 소위 심사에서는 5:24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을 감안할 때 논의의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에 대비하여 법적 기반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병존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같은 항의 전·후단에서 ‘주된 사무소’와 ‘사무소’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할 경우, 상호 대응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법률 용어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사입법례⁷⁾를 고려하여 ‘사무소’라는 용어를 ‘분사무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데, 정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특수법인의 성격과 향후 자산 귀속에 관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국고 귀속 여부를 정관에 맡기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⁹⁾

〈 재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유사 입법례 〉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내용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8)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9) 개정안은 제24조의3 제6항에서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르게 됨.

2.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는 신법인(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구법인(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을 승계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 본문 제24조의3 제5항에서는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집행기관이 하위규정 마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칙 제1

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신법인이 구법인을 승계하는 경우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뿐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승계에 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¹⁰⁾ 및 유사 입법례¹¹⁾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약칭 없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협회’로 약칭하고 있음.

약칭은 법률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약칭을 사용하므로 부칙 제1항 본문에 약칭¹²⁾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10) 대법원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 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218호, 2015.3.13.> 제3조제2항).

11) 유사 입법례

법률	부칙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484호, 2007. 5.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부칙 <법률 제17447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12)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문 의 처
02)6788-5268

【참고자료 1】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현황

1 개 요

가. 성격

-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나. 임무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업무 수행
-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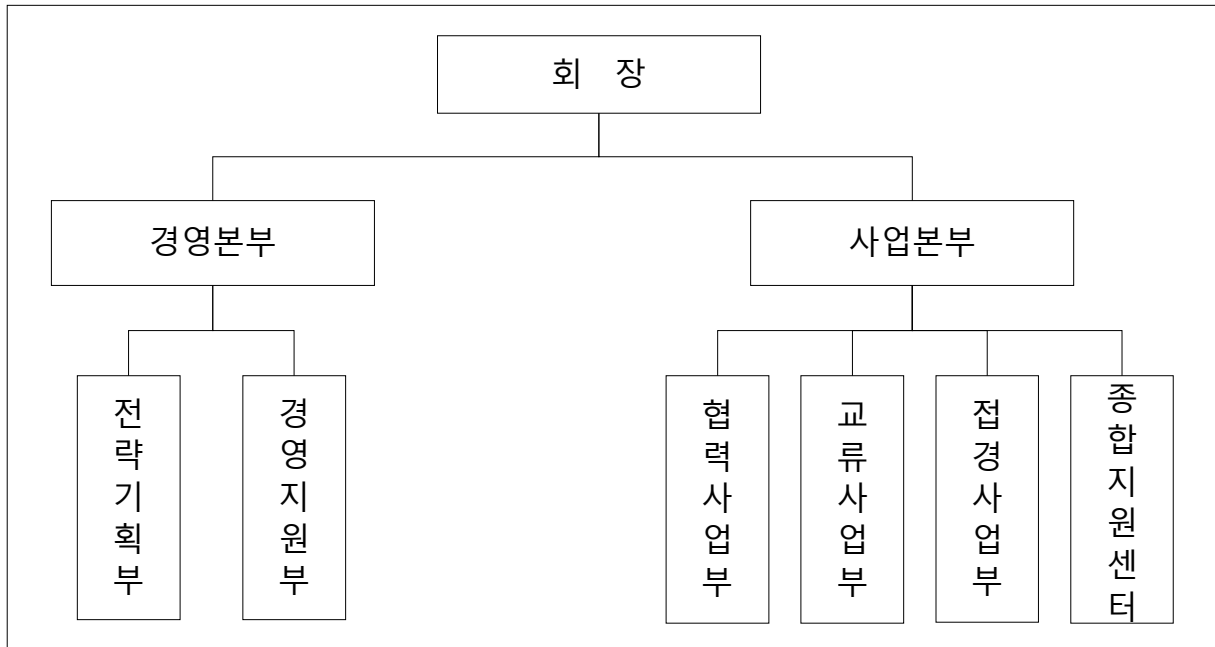
다. 설립계기

- 남북 당국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과 동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를 지정하기로 합의('06.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우리측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북측은 민경련(명지총회사)을 이행기구로 각각 지정('07.5월)

라. 주요연혁

- '07.5.22. 법인설립 인가(통일부)
- '07.5.28.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수탁
- '08.5.23.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 수탁
 - * 동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사업('18.7월) 및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 사업('18.11월) 수탁
- '09.8.14.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수탁
- '11.3.10.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보강사업」 수탁
- '12.1.31.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15.7.2.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 수탁
- '18.11.5. 「한강하구 공동조사사업」 수탁
- '18.11.20. 「남북 산림협력사업 관련 업무」 수탁
- '18.11.22.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 수탁
- '19.9.10.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 개소
- '23.8.17.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
 - * '위반신고센터' 관련 업무는 '종합지원센터'로 통합('25.6.24.)
- '24.3.29. 개성공단 일부 업무 수행기관 지정

가. 조직 : 2본부 5부 1센터



나. 인원 : 35명

('25.10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직원								계
	이사 (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비상근)	1급	2급	3급	4급	5급	무기 계약직	별도 정원	비정 규직	
정원	2	0	0	2	5	11	8	8	3	1	-	40*
현원	1	(5)	(1)	2	4	8	8	9	-	1	2**	35

* 별도정원(임금피크제) 1명 포함, ** 육아휴직 대체

다. 상임 임원

성명	주요경력	임기
정낙근 (회장)	-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 -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경제분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3.1.6. ~

('25.10월 현재 기준)

구 분		업 무 분 장
경 영 본 부	본부장	본부 총괄
	전략기획부	○ 경영 기획·예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추진 ○ 공공기관 업무(경영평가, 경영혁신 등) ○ 국회·정부 등 대외 협력 ○ 신규 사업 기획·사업조정 ○ 이사회·총회·경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관·제규정 관리 ○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 보안
	경영지원부	○ 인사·노무·복무 및 보수·복리후생 관리, 성과관리 운영 ○ 결산 및 회계·계약(물품 및 용역) 업무 ○ 임직원 교육훈련 및 인권·윤리·안전 경영 ○ 공공기관 업무(정보공개 등) ○ 시설·문서·보안·차량 관리 등
사 업 본 부	본부장	본부 총괄
	협력사업부	□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 반출·철축 등 예비검토 ○ 인도협력 정보수집 및 조사·분석 ○ 인도분야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 강화 □ 개성공단 관리 및 기업지원 ○ 맞춤형 성과형 판로지원 사업 ○ 개성기업 실태조사 □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 경험기업 현황조사 및 네트워크 관리 □ 시스템 콘텐츠 관리 및 운영지원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북한지하자원정보시스템 콘텐츠 관리
	교류사업부	□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 북한경제전문가자문단 운영 ○ 남북교역 통계 분석 및 관리 □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 통일·교류 관련 통일공감대 사업 ○ 한반도 환경·재난 관련 심포지엄 ○ 통일교류정책자문단 운영 ○ 해외사례 조사 ○ 북한지하자원 조사·연구 □ 사회문화·다자협력 운영·지원 ○ 사회문화·다자협력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 강화 ○ 사회문화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접경사업부	□ 특구·접경협력 업무 ○ 평화경제특구 추진 지원 ○ DMZ 등 접경협력 사업 지원 □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종합지원센터	□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 남북교류협력 안내·상담 등 종합민원 지원 ○ 북한주민 등 승인 지원 ○ 남북교류협력 설명회 개최 ○ 반출입물자 UN대북제재 사전검토 및 자료집 제작 ○ 지자체,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강화 ○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통 현장 점검 ○ 북·중 접경지역 동향 파악 ○ 사회문화교류 사업관리카드 제작 ○ 개성공단 기업·부동산 등록 업무 및 관련 상담, 증명서 발급

4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2024	2025
경협 기반 (무상)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612	621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108	108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27	27
		조직운영경비	인건비	1,965	2,214
			기본경비	742	806
			예비비	77	77
			소 계	2,784	3,097
	합 계		3,531	3,862	
민생 협력 지원	인도지원· 협력체계 구축·지원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인건비	420	433
			기본경비	87	88
			사업비	256	236
			소 계	763	757
	합 계		763	757	
총 계				4,294	4,618

※ 예산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정부 위탁사업)

5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목 적	주 요 내 용
1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유지 및 향후 체계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준비 - 남북교류협력 재개 대비 지자체·민간단체·기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역량 유지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상담·안내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개성공단 기업 관리 및 안정화
2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분야별 기반 구축·조성	교류 분야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환경협력 기반 조성 북한지하자원시스템 운영·관리
3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동·서해지구 군사당국간 통신망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동·서해지구 통신망 및 관련 설비 유지·보수 통신체계 개선용 자재·장비 제공 및 관리
4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 인도지원·개발협력사업 통합관리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환경 조성 - 통계 기반 사업관리,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대국민 정보 서비스 제공	인도지원 민원 응대 및 실무 지원 인도지원 통계지표 관리 및 정보제공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 인도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참고자료 2】

□ 남북교류협력재단(안)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간 업무 비교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내용('25년 기준)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북한 경제·사회 현황 조사 ▶대북제재 동향 파악 및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분야별 개발협력 및 재난 대응 동향 조사 ▶평화경제특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현장조사 등 ▶사회문화교류 사업관리카드 제작 ▶남북교역 통계 분석·관리 ▶인도지원 통계·지표 관리 ▶웹진 발간 ▶북한지하자원시스템 운영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교역·경협·금강산 기업 운영현황 조사 ▶인도지원단체 현황 관리 ▶북한경제전문가 자문단 운영 ▶통일정책자문단 운영 ▶관계기관 정기 네트워크 운영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	▶남북교류협력 설명회 개최 ▶인도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류 분야 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등
4.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절차 안내·상담·알선 등 종합적 민원 업무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상담·안내 서비스 제공 ▶북한주민접촉·방문신청·물품반출입·수송장비운행 승인 예비검토 지원 등 ▶실무안내 책자 제작·배포 ▶대북제재 안내 및 자료집 제작·배포
5.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경협기업 경영정상화 판로 지원 ▶개성공단 기업 정상화 및 판로 지원 ▶개성공단 기업 및 부동산 등록 관리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참고자료 3】

□ 남북교류협력재단 전환 시(전환 초기) 소요경비(안)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비고
사업비	소 계	1,000	
	□ 남북교류협력 연구, 조사 및 홍보	460	
	▶ 북한 경제·사회 현황 조사	100	
	▶ 대북제재 동향 파악	20	
	▶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10	
	▶ 분야별 개발협력 및 재난 대응 동향 조사	20	
	▶ 평화경제특구 실무 지원	10	
	▶ 웹진 발간	80	
	▶ 북한지하자원시스템 운영	60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160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155	
	▶ 교류협력 기업 실태조사	20	
	▶ 전문가 자문단 운영	100	
	▶ 민간교류·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35	
	□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양성	65	
	▶ 남북교류협력 설명회 개최	10	
	▶ 인도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	
	▶ 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35	
	□ 교류협력 안내 및 민원 대응	20	
	▶ 종합지원센터 운영	20	
운영비	□ 교류협력 추진기반 조성	300	
	▶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30	
	▶ 경험기업 등 경영정상화 지원	170	
	▶ 민간단체 사업 기획·추진 지원	100	
	소 계	3,800	
합 계	□ 인건비	2,900	
	□ 경상비	900	
합 계		4,800	